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관련 안내

□ 시범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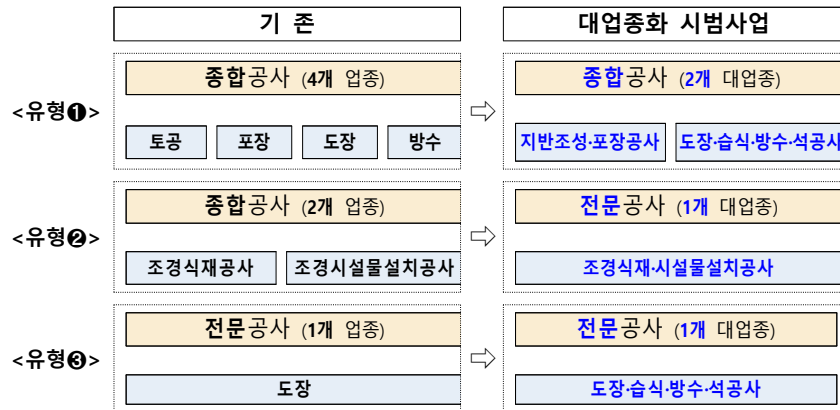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가 '22년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의 원활한 시장 안착 등을 위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총 22건의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발주

* (발주기관별 공사) 국토관리청 10, 도공 6, 철도공단 2, 철도공사 2, 공항공사 2

□ 시범사업 유형

- ①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하여 발주 (10건)
- ②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 (4건)
- ③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 →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 (8건)

<시범사업 발주예시>



* 세부 대업종화 시범사업 대상 공사의 경우 참고자료 참조

※ 입찰참가 조건(등록기준 등)을 충족하는 모든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 참여 가능

□ 입찰참가 조건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상호실적 인정기준 적용, 직접시공 원칙 적용
- <유형①>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대업종 및 기타 전문면허를 모두 등록하고 종합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법인	개인	
토목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3.5억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유형②, ③> 대업종에 포함되는 기존의 면허를 보유한 모든 전문건설업체 입찰참여 가능

□ 적격심사 평가 기준

- 시공경험 평가(실적평가)
- 기존 전문업종별 실적을 대업종별로 합산하여 평가

<예시>	보유실적	대업종 실적 인정
유형① (종합/토목 분야공사)	토공 (건축분야 5억, 토목분야 3억원), 포장 (건축분야 2억, 토목분야 0억원)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인정 기준에 따라 토목분야 로 구분된 실적 인정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억원) ∴ 토공+포장+보링의 대업종
	도장 (건축분야 2억, 토목분야 2억원), 방수 (건축분야 0억, 토목분야 0억원), 석공 (건축분야 2억, 토목분야 5억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7억원) ∴ 도장+습식·방수+ 석공의 대업종
<유형②> (전문공사)	조경식재 (5억) 조경시설물 (0억)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5억원)
<유형③> (전문(도장) 공사)	도장 (0억) 습식·방수 (2억) 석공사 (3억)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억원)

※ 단, 현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공사에 대한 실적 구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시범사업의 경우 파일공사의 실적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에 포함되지 않음

○ 경영상태(재무비율) 평가방법

구분	경영상태 평가 기준			
유형① (종합공사)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부채비율 : 95.86%, 유동비율 : 149.15%			
<유형②, ③> (전문공사)	업종별(대업종화)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현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적용업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토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9.03%	182.72%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77.78%	142.34%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도장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73.05%	159.40%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84.87%	115.5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철강구조물공사업	131.35%	136.66%
	철강재설치공사			
수중공사	수중·준설공사업	135.68%	131.67%	
준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승강기·삭도공사업	75.77%	116.44%	
삭도설치공사				
※ 예시)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으로 발주된 전문공사에 참여한 경우 부채비율은 73.05%, 유동비율은 159.40%를 기준으로 평가진행				

□ 기타 유의사항

- 적격심사 기준 등 기타 평가 기준의 경우 발주기관별 상이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시 유의 요망

□ 실적 확인 서류 발급·제출 사항

- (종합공사 입찰)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대업종화 시범사업 - 종합공사 입찰용**] 발급·제출
- (전문공사 입찰)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신청)서[**대업종화 시범사업 - 전문공사 입찰용**] 발급·제출
 - ※ 대업종화 시범사업 관련 실적확인서는 해당 시·도회를 통해 직접 방문·발급하여 발주처에 제출(**오프라인만 가능**)
- § 종합공사 업종별 실적조회 방법 : 협회 홈페이지(로그인 → 마이페이지 → 종합공사 입찰용 실적확인)를 통해 해당 종합공사 업종별(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로 구분 실적 확인
 - 대업종화 해당 업종의 경우 구성 업종 실적을 합산